

의정활동보고서

제190회 정례회(2004. 7. 1~7. 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90회 정례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도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여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야말로 어느 회기보다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7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원구성을 새로이 하여 진정한 민의 대변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집행부도 이번 회기에 전반기에 추진한 도정 전반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전반기 2년동안 우리 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조례안을 비롯한 202건의 안건과 42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집행부 주요 견제 수단인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190여건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뒷받침 되었기에 2년동안의 의장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보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가 안정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의 건설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차원에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장마철을 맞아 상습 재해 우심
지역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
하기 위한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도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7. 1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공포 사항

3. 기타사항

부 록

☐ 조 례 안

☐ 결 산 안

☐ 동 의 안

☐ 건 의 안

☐ 기 타 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90회 정례회는 2004년 7월 1일 개최하여 7월 9일까지 9일간의 회기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12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7월 1일(목)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0회경상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3회계연도경상북도및경상북도교육청결산검사결과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및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경상북도울릉군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다.

7월 5일(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철회의건을 의결하고 의장(이철우 의원), 부의장(손규삼, 이정백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휴회하였다.

그리고 7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울릉군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소형항공기이용한지역항공노선망구축에관한건의안, 경상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장선거,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 한 후 제19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정례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라. 집회공고일 : 2004. 7. 1

마. 집 회 일 : 2004. 7. 1(목)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4. 7. 1 ~ 7. 9(9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55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12	1	2	2	2	1	1	1	2
누계	243	26	25	36	41	25	28	25	37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동

가. 본회의

[illegible]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7. 1(목) 15:0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7. 1(목) 14:0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7. 2(금) 11:0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 공무원교육원 소관 ○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2 차 원안가결 "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7. 1(목) 13:30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 자치행정국·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 " " "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7. 2(금) 11:0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7. 1(목) 13:3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7. 2(금) 11:0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2 차 원안가결 〃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7. 1(목) 13:3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산업관광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7. 2(금) 11:0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경제통상실 소관 ○ 경상북도울릉군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 소형항공기활이용한지역항공노선망국축에 관한건의안	제 1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7. 2(금) 11:0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 건설도시국 소관 - 소방본부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7. 3(토) 10:0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 토론 · 의결	제 20 차 원안가결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4. 7. 6(화) 10:00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 자치행정국, 경도대학, 공무원교육원 소관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 문화체육관광국, 경제통상실 소관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 보건환경국, 사회복지여성국, 보건환경 연구원 소관 -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 의회사무처 소관 - 토론 · 의결	제 21 차 원안가결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0 (212)	10 (211)	9 (185)	1 (25)	(1)	1 (1)		
조 례 안	소 계	6 (100)	6 (100)	5 (88)	1 (11)	(1)			
	의 회 제 안	1 (10)	1 (10)	(5)	1 (4)	(1)			
	도지사 제 출	4 (71)	4 (71)	4 (65)	(6)				
	교육감 제 출	1 (19)	1 (19)	1 (18)	(1)				
예 산 · 결 산		2 (21)	2 (21)	2 (10)	(11)				
동 의 · 승 인		1 (52)	1 (52)	1 (51)	(1)				
건 의 안		1 (8)	1 (8)	1 (7)	(1)				
결 의 안		(8)	(8)	(8)					
기 타 안		(23)	(22)	(21)	(1)		1 (1)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10 (214)	10 (211)	6 (100)	2 (21)	1 (52)	1 (8)	(8)	(22)		1 (1)	(2)
의회운영	(5)	(5)	(4)				(1)				
기 획	1 (17)	1 (16)	1 (9)		(5)	(1)		(1)			(1)
행정사회	4 (62)	4 (61)	3 (42)		1 (17)	(1)	(1)				(1)
교육환경	1 (30)	1 (30)	1 (23)		(6)			(1)			
농 수 산	(12)	(12)	(4)		(7)	(1)					
산업관광	2 (29)	2 (29)	1 (14)		(13)	1 (1)	(1)				
건설소방	(10)	(10)	(3)		(4)	(2)		(1)			
특 별	2 (21)	2 (21)		2 (21)							
본회의	(28)	(27)	(1)			(2)	(5)	(19)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78)	(5)	(9)	(9)	(16)	(6)	(4)	(8)	1 (9)	(12)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8)	(4)	(2)	(1)	(1)					
교육환경	(15)			(1)		(6)		(7)		(1)
농 수 산	(8)			(1)	(1)				(6)	
산업관광	(16)		(7)	(1)			(4)			(4)
건설소방	1 (26)	(1)		(5)	(14)			(1)	1 (3)	(2)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77)	(77)				1 (1)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8)	(8)				
교육환경	(15)	(15)				
농 수 산	(8)	(8)				
산업관광	(16)	(16)				
건설소방	(25)	(25)				1 (1)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채희영 의원외 39인 (2004. 6. 11)	경상북도울릉군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산업관광 (2004. 6.22)
김석호 의원외 50인 (2004. 6. 12)	소형항공기활이용한지역항공노선화망구축에 관한건의안	산업관광 (2004. 6.22)
경상북도교육감 (2004. 6. 16)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4. 6.21)
경상북도교육감 (2004. 6. 16)	2003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교육환경 (2004. 6.21)
경상북도지사 (2004. 6. 22)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 비비지출승인의건	각 상임위 (2004. 6.22)
경상북도지사 (2004. 6. 22)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 획 (2004. 6.22)
경상북도지사 (2004. 6. 22)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 6.22)
경상북도지사 (2004. 6. 22)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 6.22)
경상북도지사 (2004. 6. 22)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 6.22)
경상북도지사 (2004. 6. 2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사회 (2004. 6.22)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4. 6. 1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4. 7. 1
2004. 6. 1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4. 7. 1
2004. 6. 1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2004. 7. 1
2004. 6. 1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2004. 7. 1

3. 기타 사항

○ 경도대학 문화체육관 개관식 행사

- 일 시 : 2004. 6. 15(화). 11:00
- 장 소 : 경도대학 문화체육관 전정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축사)

○ 의성 컬링센터 건립 기공식

- 일 시 : 2004. 6. 15(화). 14:30
- 장 소 : 컬링센터 공사현장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축사)

○ 제51회 반공의날 기념식 및 통일반보 강연회

- 일 시 : 2004. 6. 18(금). 11:00
- 장 소 : 영천 시민회관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축사)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 일 시 : 2004. 6. 18(금). 15:00
- 장 소 : 대전시의회 회의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 6.25전쟁 제54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004. 6. 25(금). 11:00
- 장 소 : 청도 모계고교 체육관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격려사)

○ 제1회 전국 시낭송 및 문학강연행사

- 일 시 : 2004. 6. 26(토). 15:00
- 장 소 : 영주 풍기호텔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축사)

○ [장경곤 의회사무처장] 명예퇴임식

- 일 시 : 2004. 6. 30(수). 15:00
- 장 소 : 도청 강당

○ 4-H 중앙경진대회 봉화식

- 일 시 : 2004. 6. 30(수). 20:00
- 장 소 : 상주대학교 운동장
- 참 석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축사)

부 록

- 조 례 안 : 6건
- 결 산 안 : 2건
- 동 의 안 : 1건
- 건 의 안 : 1건
- 기 타 안 : 2건

□ 조 례 안 : 6건

- 경상북도울릉군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7.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최동단에 위치하여 육지와 왕래가 불편한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정주욕 고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임지원 대상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제3조(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 ① 지원운임은 경상북도일반회계재정자금(이하 '재정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

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제4조(재정지원금 기준) ① 여객선 이용객 1인당 재정지원금은 여객선 운임의 30%(이하 '운임지원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운임지원율은 해운법 제8조에 의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여객선 운임중 1등실 요금과 실제 여객선을 이용한 주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재정지원금은 매분기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② 사업자는 매분기 승선자 명단(일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분기 첫달의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날 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급된 재정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분기 지급일에 정산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 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약체결) 도지사는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에서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상여객 운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지원율은 조정하여 시행한다.

수 정 조 서

당 초 안	수 정 안	비 고
“조례명” ○ 경상북도 <u>울릉군</u> 여객선운임 지원조례	“조례명” ○ 경상북도 <u>울릉군</u> 민여객선운임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최동단 <u>울릉군</u> 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의 일부분을 지원하여 육지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최 동 단에 위치하여 육지와 왕래가 불편한 <u>울릉군</u> 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정주 의욕 고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임지원 대상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은 <u>울릉군</u> 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제2조(운임지원 대상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은 <u>승선일</u> 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상 <u>울릉군</u> 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금 기준)① 재정지원 금의 산출기준은 해운법 제8조에 의한 지원당시의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여객선 운임을 근거로 한다. ② 여객선 이용객 1인당 재정 지원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여객선 운임의 30%(이하 ‘운임지원율’이라 한다)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재정지원금은 실제 여객선을 이용한 주민수와 여객선 운 임기준에 의거 운임지원율 로 산출한다.	제4조(재정지원금 기준) ① 여객선 이용객 1인당 재정지원금은 여 객선 운임의 30%(이하 “운임지 원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운임지원율은 해운법 제8조에 의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 리된 여객선 운임중 1등실 요금 과 실제 여객선을 이용한 주민수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당 초 안	수 정 안	비 고
제5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울릉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재정지원금은 울릉군수가 도지사에게 운임지원 소요자금을 교부받아 제2조에서 정한 울릉주민의 이용실적에 따라 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③ 사업자는 매월 승선자 명단(일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여객운임을 울릉군수에게 청구한다. ④ 재정지원금은 제3항에 의한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군수가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⑤ 사업자로부터 승선실적자료를 접수한 울릉군수는 필요할 시 승선자료에 대하여 확인·조사할 수 있다. ⑥ 재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또는 착오지급된 경우에는 익월에 정산조치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재정지원금은 매분기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② 사업자는 매분기 승선자 명단(일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분기 첫 달의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급된 재정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었거나 착오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분기 지급일에 정산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 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당 초 안	수 정 안	비 고
제6조(업무협약 체결) <u>울릉군수는</u>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u>해상 여객 운송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u>	제6조(업무협약 체결) <u>도지시는</u>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u>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u>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u>경상북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조례에 의한다.</u>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u>	
부 칙 ① 이 조례는 <u>공포한 날</u>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u>2005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7.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민연수 및 영농기술교육을 위하여" 를 "도민연수를 위하여"로 하고, "시설사용,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시설사용"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전·현직공무원, 농업경영관계 전문가"를 "전·현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배양교육과 <u>도민연수 및 영농 기술교육을 위하여</u> 경상북도지방공무원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강사초빙, <u>시설사용, 농기계순회수리봉사</u>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도민연수를 위하여</u> <u>시설사용</u>
제2조(강사) ① 교육원장은 도의원, 대학교수, <u>전·현직공무원, 농업경영관계전문가</u>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강사) ① <u>전·현직공무원</u>
제4조(농기계 순회수리봉사) ① 교육원장은 <u>농기계의 정비 및 수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u>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및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기계 순회 수리시에는 안전사용, 고장 방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순회수리 봉사시에는 수리장비 및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리인건비는 무료로 하되 부품대금은 구입원가에 한하여 수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2,000원이하의 소액부품 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부품대금의 징수 및 관리) ① 농기계 순회수리시에 징수한 부품대금을 <u>출장 종료</u> 익일까지 교육원 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한 장비 및 부품대금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7.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별표1】의 경제통상분야 소관별 경제교통정책과란 건명 제1호 내지 9호, 제16호, 제33호 내지 제36호, 제41호 내지 44호, 제54호 사목, 제55호, 제56호, 제61호 다목 및 라목을 삭제하며, 건명 제53호 근거법령란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6”으로, 제61호 자목 건명란 중 “의견진술”을 “청문”으로 하며,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경제교통 정책과	62.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동법 제39조	시장 · 군수

과학기술진흥과 건명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9호 내지 제11호를 삭제하며, 제6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동 타인의 토지출입 등”을 “타인의 토지 출입허가 등”으로, “동법 제56조”를 “동법 제88조”로, 제7호 근거법령란 중 “동법 제57조”를 “동법 제89조”로, 제8호 근거법령란 중 “전기사업법 제42조”를 “동법 제71조”로 하며, 제19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과학기술 진흥과	19.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신고 수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1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시장 · 군수
	20. 검사대상기기 조종사의 선임·해임·퇴직신고 접수 및 선임기한 연기 승인	동법 제59조	
	21.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제18조제2항	
	22.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검사	동법 제21조	
	23.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동법 제28조	

기업노동과 건명 제1호 근거법령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로, 제1호 바목 “산업단지안의 시설경비, 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업무”를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관한 업무”로, 사목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업무”를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하며 아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업 노동과	1.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자.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차.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시장 · 군수

자치행정분야 소관별란 중 “세정회계과”를 “재정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분야 문화예술과 소관별란 중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산업과”로 하며, 건명 제1호 내지 8호를 삭제한다.

체육청소년과 건명 제2호 다목 내지 마목, 사목 내지 자목을 삭제하며, 제2호 건명란 중 “신고체육시설업및등록체육시설업”을 “등록체육시설업”으로, 나목 “체육시설의 등록 및 신고 수리”를 “체육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바목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로 한다.

농수산분야 농산과 건명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농업기반과 건명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업 기반과	2.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등록시 수원공소재지 시군에 등록 3.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단, 농업기반공사 구역내의 시설물은 제외) 4. 농업기반시설의 용도 폐지 (단, 농업기반공사 구역내의 시설물은 제외)	농어촌정비법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1조	시장 · 군수

유통통작과 건명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유통 특작과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 또는 조사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동법 제38조	시장 · 군수

축산과 건명 제5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9호, 제22호, 제23호를 삭제한다.

해양수산과 건명 제6호 내지 제17호를 삭제한다.

보건환경산림분야 보건위생과 건명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제18호, 제19호, 제22호, 제24호 내지 제27호, 제30호 내지 제33호, 제35호, 제36호,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 제44호, 제46호, 제47호, 제50호, 제52호 가목, 제53호 내지 제55호, 제58호를 삭제하며, 제3호 건명란 중 “제1종”을 “제1군”으로, 제5호 건명란 중 “제1종”을 “제1군”으로, 제7호 건명란 중 “제3종”을 “제3군”으로, 제10호 근거법령란 중 “약사법 제35조제2항,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7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1조의3, 제79조”를 “약사법 제35조제2항”으로 하며, 제13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향정신성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을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8조”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로, 제14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및 동지정사항 변경”을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으로, “동법 제8조

제1항”을 “동법 제6조제2항”으로, 제15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을 “동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를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9조”를 “동법 제7조”로, 제16호 근거법령란 중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8조”로, 제17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의약품의 사고 보고”를 “마약류의 사고 보고”로, “동법 제27조”를 “동법 제12조”로, 제20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향정신성의약품 처리의 자격상실신고”를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으로,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13조”로, 제21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업무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을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을 “동법 제44조”로, 제23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몰수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몰수마약류의 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로, “동법 제47조”를 “동법 제53조”로, 제28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동 업무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때의 신고”를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로, “동법 제10조제3항”을 “동법 제8조제3항”으로, 제29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마약취급자의 명부의 등록 말소”를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로, “동법 제11조제1항”을 “동법 제8조”로, 제34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마약소매업자의 판매보고 처리”를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보고 처리”로, “동법 제35조”를 “동법 제29조”로, 제37호 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각각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 교부”를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내용 작성·비치”로, “마약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를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로, 제45호 가목 건명란 중 “소독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로,

다목 건명란 중 “소독업영업정지·허가취소”를 “소독업영업정지·영업소 폐쇄”로, 제59호 근거법령란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환경관리과 건명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27호, 제28호, 제30호
 마목 내지 사목, 타목 및 파목, 제31호 차목 및 파목을 삭제하며,
 근거법령란 중 제31호 나목 “동법 제21조”를 “동법 제19조”로, 다목
 “동법 제22조”를 “동법 제20조”로, 마목 “동법 제24조 및 제25조
 제4항”을 “동법 제24조”로, 바목 “동법 제25조 제3항”을 “동법 제
 25조 제4항”으로, 사목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7조”로, 아목 “동
 법 제27조 제1항”을 “동법 제38조”로, 자목 “동법 제27조 제3항”을
 “동법 제38조”로, 카목 “동법 제36조”를 “동법 제27조”로, 타목 “동
 법 제36조의2”를 “동법 제28조”로, 하목 “동법 제36조의4”를 “동법
 제36조”로, 거목 “동법 제37조”를 “동법 제29조”로, 너목 “동법 제
 39조”를 “동법 제30조”로, 더목 “동법 제39조의2”를 “동법 제31조”
 로, 러목 “동법 제40조”를 “동법 제30조제4항”으로, 머목 “동법 제
 45조”를 “동법 제34조”로, 버목 “동법 제50조”를 “동법 제71조”로,
 서목 “동법 제51조”를 “동법 제72조”로 하며, 제29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관리과	29.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업무 파.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의 거리 초과 운반의 경우 폐기물 인계서 접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시장 · 군수

수질보전과 건명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수질보전과	11.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 제4항	시장 · 군수

산림과 건명 제3호, 제12호,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1호 건명란 중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제11호 가목 건명란 중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나목 “천연보호림내”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내”로 하며, 건명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산림과	15. 운전면허 등의 취소·정지 및 차량에 대한 처분	산림법 제94조	시장 · 군수

사회복지여성분야 사회복지과 건명 제1호를 삭제한다.

소관별란 중 “가정복지과”를 “노인복지과”로 하며, 건명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여성정책과 건명 제3호를 삭제한다.

건설도시분야 도로과 건명 제13호 및 제14호, 제25호를 삭제한다.

제2조 제4항 【별표4】의 소관별 환경관리과 제1호 차목 및 과목을 삭제하며, 근거법령란 중 제1호 나목 “동법 제21조”를 “동법 제19조”로, 다목 “동법 제22조”를 “동법 제20조”로, 마목 “동법 제24조 및 제25조 제4항”을 “동법 제24조”로, 바목 “동법 제25조 제3항”을 “동법 제25조 제4항”으로, 사목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7조”로, 아목 “동법 제27조 제1항”을 “동법 제38조”로, 자목 “동법 제27조 제3항”을 “동법 제38조”로, 카목 “동법 제36조”를 “동법 제27조”로, 타목 “동법 제36조의2”를 “동법 제28조”로, 하목 “동법 제36조의4”를 “동법 제36조”로, 거목 “동법 제37조”를 “동법 제29조”로, 너목 “동법 제39조”를 “동법 제30조”로, 더목 “동법 제39조의2”를 “동법 제31조”로, 러목 “동법 제40조”를 “동법 제30조제4항”으로, 머목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34조”로, 버목 “동법 제50조”를 “동법 제71조”로, 서목 “동법 제51조”를 “동법 제72조”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처리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 · 구조문 대비표

경제통상분야

[illegible]

[illegible]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경제교통 정책과	<u>마.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신고</u> <u>바.등록취소 등 처분</u> <u>사.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계획수립·시행</u> <u>아.청문</u> <u>자.실태조사</u> <u>차.보고·검사 및 질문</u> <u>카.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u> 61. (생략) <u>다.도로의 유지와 보수</u> <u>라.도로의 원상회복 지시</u> <u>자.의견진술</u> <u><신 설></u>	(생략)	(생략)	경제교통 정책과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6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자.청문</u> 62. <u>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u> <u>가.사용신고·변경신고</u> <u>나.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u>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동법제39조	
과학기술 진흥과	<u>1. 시공자등록에 관한 사항</u> <u>가.보고·검사</u> <u>나.과태료 부과</u> <u>다.청 문</u> <u>2.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다음사항</u> <u>가.채용·해임의 신고수리</u> <u>나.과징금 부과징수</u> <u>다.청문</u> <u>라.과태료 부과징수</u> <u>3.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사항</u>	(생략)	(생략)	과학기술 진흥과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과학기술진흥과	가.과태료 부과징수	(생략)	(생략)	과학기술진흥과	<삭제>		
	나.과징금 부과징수				<삭제>		
	다. 청문				<삭제>		
	5. 타인의 토지사용				<삭제>		
	6. 동 타인의 토지 출입 등	동법제56조			6. 타인의 토지 출입허가 등	동법제88조	
	7. (생략)	동법제57조			7. (현행과 같음)	동법제89조	
	8. (생략)	전기사업법			8. (현행과 같음)	동법제71조	
		제42조			<삭제>		
	9. 자가용전기 설비공사 계획(변경)신고				<삭제>		
	10. 전기안전관리규정(변경) 신고수리(단,사업용제외)				<삭제>		
	11.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다음사항(단,제조시설제외)				<삭제>		
	가.과징금 처분				<삭제>		
	나.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삭제>		
	다.공급시설의 개선명령등				<삭제>		
	라.조정명령 등				<삭제>		
	마.보 고				<삭제>		
	바. 과태료 부과				<삭제>		
	사.청 문				<삭제>		
	<신설>				19.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신고수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신설>				20. 검사대상기기 조종사의 선임·해임·퇴직신고 접수 및 선임기한 연기승인	동법제59조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과학기술진흥과	<u><신설></u> <u><신설></u> <u><신설></u>			과학기술진흥과	21. <u>승강기 운행정지 명령</u> 22. <u>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검사</u> 23. <u>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u>	<u>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u> <u>동법제21조</u> <u>동법제28조</u>	
기업노동과	1. (생략) 가.~마.(생략) <u>바.산업단지안의 시설경비, 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u> <u>사.기타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업무</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8호및동법시행령제5조</u>	(생략)	기업노동과	1. (현행과 같음) 가.~마.(현행과 같음) <u>바.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u> <u>사.기타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u> <u>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u> <u>자.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u> <u>차.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u>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8호및동법시행령제5조</u>	

자치행정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세정 회계과	1.~4.(생략)			재정과	1.~4.(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 예술과	1.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2. 전통사찰 경내지 보호구역 지정 협의 3. 종교의식용 물품의 면세 용도 증명서 발급 4. 공연자등록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5. 동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6. 공연자 폐업신고 수리 7. 동 공연자의 등록취소 8. 공연자 등록취소 등 청문 9. (생략)	(생략)	(생략)	문화예술 산업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9. (현행과 같음)		
체육 청소년과	2. 신고체육시설업 및 등록 체육시설업…… 가.(생략) 나.체육시설의 등록 및 신고 수리 다.양수·합병신고 수리 라.휴업·폐업신고 수리 마.시정명령 바.등록취소,영업의폐쇄명령 또는 영업의 정지 명령 사.청문 등 아.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자.과태료의 부과징수	(생략)	(생략)	체육 청소년과	2. 등록체육시설업………… …………… 가.(현행과 같음) 나.체육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삭 제> <삭 제> <삭 제> 바.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삭 제> <삭 제> <삭 제>		

농수산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산과	2. 농약판매업 등록 3. 농약판매자에 대한 경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4. 농약판매업자에 대한 농 약관리에 관한 보고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한 보완명령	(생략)	(생략)	농산과	<삭 제> <삭 제> <삭 제>		
농업 기반과	<신 설> <신 설> <신 설>			농업 기반과	2.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등록시 수원공소제지 시군에 등록 3.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단,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의 시설물은 제외) 4. 농업기반시설의 용도 폐지 (단,농업기반공사 구역내의 시설물은 제외)	농어촌장비법 제7조동법시 행령제20조 동법제20조 동법제21조	
<신설>	<신 설> <신 설>			유통 특작과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 또는 조사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농산물품 질관리법 제18조 동법제38조	시장 · 군수
축산과	5.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사항 등의 변경허가 및 허가증 재교부 등 6.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행정처분 8.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폐업신고 수리	(생략)	(생략)	축산과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축산과	<u>9. 동물병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수의사)수리</u> <u>10. 동휴업 및 폐업신고</u> <u>11. 동물병원에 대한 업무 감독 및 영업정지 처분 등</u> <u>13.미검사품 폐기처분 등 조치명령</u> <u>14. 격리와 이동제한 등</u> <u>16. 조성초지의 전용허가(2개시군이상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u> <u>19. 미검사품 조사 및 수거</u> <u>22.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격리, 이동제한 등 명령</u> <u>23.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u>	(생략)	(생략)	축산과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해양수산과	<u>6. 시군 관할구역내 어업권 보상금의 부담지시 및 동부담금의 징수</u> <u>7. 어선의 건조, 개조허가의 취소 등</u> <u>8. 방치어선의 관리</u> <u>9. 청문</u> <u>10. 과태료 부과징수(단어선법 제21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를 기한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은 제외)</u> <u>11. 어선의 등기와 등록</u> <u>12. 등록사항 변경</u> <u>13. 어선등록의 말소와 선박 국적증서 등의 반납</u>	(생략)	(생략)	해양수산과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해양수산과	14. 어선원부의 등본, 사본과 열람 등 15.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허가어업 및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에 대한 어선 건조, 개조, 발주 허가 16. 영역서 교부 17. 현장 확인업무	(생략)	(생략)	해양수산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보건환경산림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위생과	1.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실시 2. 전염병에 대한 건강진단 명령 3. 제1종..... 4. 전염병예방 시설의 설치 5. 제1종..... 7. 제3종..... 8. 예방접종 증명서의 교부 10. (생략)	(생략)	(생략)	보건위생과	<삭제> <삭제> 3. 제1군..... <삭제> 5. 제1군..... 7. 제3군..... <삭제> 10. (현행과 같음)		약사법 제35조 제2항

약사법 제35조 제2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7조, 제69조, 제71조의3, 제79조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 위생과	13. <u>향정신성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u>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8조	(생략)	보건 위생과	13. <u>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u>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4. <u>향정신성의약품의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및 동 지정사항 변경</u>	동법 제8조제1항			14. <u>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u>	동법 제6조제2항	
	15. <u>동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u>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9조			15. <u>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u>	동법 제7조	
	16. (생략)	동법 제24조			16. (현행과 같음)	동법 제8조	
	17. <u>향정신성의약품의 사고보고</u>	동법 제27조			17. <u>마약류의 사고 보고</u>	동법 제12조	
	18. <u>향정신성의약품의 검사와 수거</u>				<삭 제>		
	19. <u>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명령</u>				<삭 제>		
	20. <u>향정신성의약품 처리의 자격상실 신고</u>	동법 제28조			20. <u>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u>	동법 제13조	
	21. <u>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업무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u>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21. <u>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u>	동법 제44조	
	22. <u>향정신성의약품 감시원의 임명</u>				<삭 제>		
	23. <u>몰수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u>	동법 제47조			23. <u>몰수마약류의 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u>	동법 제53조	
	24. <u>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승인</u>				<삭 제>		
	25. <u>마약소매업자 마약관리자(이하 "마약취급자"라 한다)의 면허 및 동 면허사항 변경</u>				<삭 제>		
	26. <u>마약취급자의 명부작성 및 면허증 교부</u>				<삭 제>		
	27. <u>마약취급업무폐지신고</u>				<삭 제>		
	28. <u>동 업무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때의 신고</u>	동법 제10조제3항			28. <u>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u>	동법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 위생과	<u>29. 마약취급자의 명부의 등록 말소</u>	<u>동법 제11조제1항</u>	(생략)	보건 위생과	<u>29.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한 사항 기재</u>	<u>동법 제8조</u>				
	<u>30. 사고마약의 보고 처리</u>				<u><삭 제></u>					
	<u>31. 마약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u>				<u><삭 제></u>					
	<u>32. 마약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권</u>				<u><삭 제></u>					
	<u>33. 마약취급업무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 등</u>	<u>동법 제35조</u>			<u><삭 제></u>	<u>동법 제29조</u>				
	<u>34. 마약소매업자의 판매보고 처리</u>				<u>34.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 보고 처리</u>					
	<u>35. 마약의 감시(출입 감시와 수거)</u>				<u><삭 제></u>					
	<u>36. 마약감시원의 임명</u>				<u><삭 제></u>					
	<u>37.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교부</u>				<u>37.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내용 작성·비치</u>	<u>동법 제10조</u> <u>동법시행령 제7조</u>				
	<u>38. 몰수마약의 처리</u>				<u><삭 제></u>					
	<u>40. 안마시술에 대한 지도점검</u>				<u><삭 제></u>					
	<u>4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수리</u>				<u><삭 제></u>					
	<u>42. 동 시술소의 개설신고 및 이전신고</u>				<u><삭 제></u>					
	<u>44. 공·사립병원을 격리병사 또는 진료소로 대용 지정하는 권한</u>				<u><삭 제></u>					
	<u>45. (생략)</u> <u>가.소독업허가 및 변경허가</u> <u>나.(생략)</u> <u>다.소독업영업정지·허가 취소</u>	<u>마약법 제3조</u> <u>동법시행령 제9조</u>			<u>45. (현행과 같음)</u> <u>가.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u> <u>나.(현행과 같음)</u> <u>다.소독업영업정지·영업 소폐쇄</u>					
	<u>46. 불량 의약품 수거 폐기 처분</u>				<u><삭 제></u>					
	<u>47. 촉탁의사 위촉</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 위생과	50. <u>적출물등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u> <u>가.적출물처리업자 지정</u> <u>및 지정서 교부</u> <u>나.휴업·폐업·장소이전·</u> <u>명의변경 등 신고수리</u> <u>다.지정, 취소</u> 52. (생략) <u>가.결핵에 대한 정기건강</u> <u>진단 및 임신 건강진단</u> 53. <u>예방접종 공고</u> 54. <u>식품으로 기인된 사체의</u> <u>해부</u> 55. <u>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u> <u>사무</u> 58. <u>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u> <u>재교부(다만,면허증 최초</u> <u>교부시도와 현 주소지의</u> <u>시도가 다른 경우에 재</u> <u>교부는 최초 교부 시도</u> <u>에서 교부하고, '83.7월이</u> <u>후 교육기관 이수후 면</u> <u>허증을 발급받은 자는</u> <u>최초교부 당시의 주소지</u> <u>의 시군구에서 재교부함)</u> 59. (생략)	(생략)	(생략)	보건 위생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9. (현행과 같음)	공중위생관 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7조내지 제20조	공중위생관 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관리과	10. 자동차 운행의 규제요청 12. 운행차의 수시점검 (단,도에서 도 병행) 13.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개선명령 및 개선결과보고 등 (단, 도에서 병행) 27.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8.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가.분리수거 체계구성 나.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29. (생략) 가.~타.(생략) <신 설> 30. (생략) 가.~라.(생략) 마.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바.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자에 대한 명령 사.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출입 검사 등 아.~카.(생략) 타.대집행 파.과태료 부과,징수	(생략)	(생략)	환경 관리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9. (현행과 같음) 가.~타.(현행과 같음) 파.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처리하는 자의 거 리초과 운반의 경우 폐 기물 인계서 접수 30. (현행과 같음) 가.~라.(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아.~카.(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환경 관리과	31. (생략) 가.(생략) 나.(생략) 다.(생략) 라.(생략)	동법제21조 동법제22조			31.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다.(현행과 같음) 라.(현행과 같음)	폐기물관 리법 제25 조제4항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관리과	마.(생략) 바.(생략) 사.(생략) 아.(생략) 자.(생략) 차.부담금의 강제징수 카.(생략) 타.(생략) 파.도립공원시설의유지관리와 명예관리인의위촉및운영 하.(생략) 거.(생략) 너.(생략) 더.(생략) 러.(생략) 머.(생략) 버.(생략) 서.(생략)	<u>동법제24조</u> 및 <u>제25조제4항</u> <u>동법</u> <u>제25조제3항</u> <u>동법제26조</u> <u>동법</u> <u>제27조제1항</u> <u>동법</u> <u>제27조제3항</u> (생략) <u>동법제36조</u> <u>동법</u> <u>제36조의2</u> <u>동법</u> <u>제36조의4</u> <u>동법제37조</u> <u>동법제39조</u> <u>동법</u> <u>제39조의2</u> <u>동법제40조</u> <u>동법제45조</u> <u>동법제50조</u> <u>동법제51조</u>	(생략)	환경관리과	마.(현행과 같음) 바.(현행과 같음) 사.(현행과 같음) 아.(현행과 같음) 자.(현행과 같음) <삭제> 카.(현행과 같음) 타.(현행과 같음) <삭제> 하.(현행과 같음) 거.(현행과 같음) 너.(현행과 같음) 더.(현행과 같음) 러.(현행과 같음) 머.(현행과 같음) 버.(현행과 같음) 서.(현행과 같음)	<u>동법제24조</u> <u>동법</u> <u>제25조제4항</u> <u>동법제37조</u> <u>동법제38조</u> <삭제> <u>동법제27조</u> <u>동법제28조</u> <삭제> <u>동법제36조</u> <u>동법제29조</u> <u>동법제30조</u> <u>동법제31조</u> <u>동법</u> <u>제30조제4항</u> <u>동법제34조</u> <u>동법제71조</u> <u>동법제72조</u>	
수질보전과	<신설>			수질보전과	<u>11.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u>	<u>수질환경보전법</u> <u>제29조제3항</u> <u>제4항</u>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산림과	3. 임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11. 천연보호림 가.천연보호림 나.천연보호림내 12. 종묘판매업의 등록 14. 종묘판매업자의등록취소 <신설>	(생략)	(생략)	산림과	<삭제> 1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나.산림유전자원보호림내... <삭제> <삭제> 15. 운전면허 등의 취소·정지 및 차량에 대한 처분	산림법 제94조	

사회복지여성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생략)	(생략)	사회복지과	<삭제>		
가정복지과	1. 일반아동복지에 대한 다음 권한 가.아동의 친권상실신고의 청구 나.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2.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생략)	(생략)	노인복지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여성정책과	3.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생략)	(생략)	여성정책과	<삭제>		

건설도시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로과	13. 지방도의 접도구역안에 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14. 동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물건의 부가증치 허가 25.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 적성 검사	(생략)	(생략)	도로과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4】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관리과	1. (생략) 가.(생략) 나.(생략) 다.(생략) 라.(생략) 마.(생략) 바.(생략) 사.(생략) 아.(생략) 자.(생략) <u>차.부담금의 강제징수</u> 카.(생략) 타.(생략) <u>파.도립공원시설의유지관리와 명예관리인의위촉및운영</u> 하.(생략) 거.(생략) 너.(생략) 더.(생략) 러.(생략) 머.(생략) 버.(생략) 서.(생략)	(생략) 동법제21조 동법제22조 동법제24조및 제25조제4항 동법 제25조제3항 동법제26조 동법 제27조제1항 동법 제27조제3항 (생략) 동법제36조 동법 제36조의2 (생략) 동법 제36조의4 동법제37조 동법제39조 동법 제39조의2 동법제40조 동법제45조 동법제50조 동법제51조	(생략)	환경 관리과	1.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다.(현행과 같음) 라.(현행과 같음) 마.(현행과 같음) 바.(현행과 같음) 사.(현행과 같음) 아.(현행과 같음) 자.(현행과 같음) <삭 제> 카.(현행과 같음) 타.(현행과 같음) <삭 제> 하.(현행과 같음) 거.(현행과 같음) 너.(현행과 같음) 더.(현행과 같음) 러.(현행과 같음) 머.(현행과 같음) 버.(현행과 같음) 서.(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동법제19조 동법제20조 동법제24조 동법 제25조제4항 동법제37조 동법제38조 동법제38조 동법제27조 동법제28조 동법제36조 동법제29조 동법제30조 동법제31조 동법 제30조제4항 동법제34조 동법제71조 동법제72조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7.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의 실과명 경제교통정책과 위탁사무명란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실과명란 중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노동과”로, 위탁사무명 제1호 근거법령란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제1호 사목 “산업단지안의 시설경비, 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업무”를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관한 업무”로, 아목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업무”를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하며 자목 내지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명	위 탁 사 무 명	사무수탁자	근거법령
기 업 노동과	1.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차.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카.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실과명란 중 “실업대책단”을 “기업노동과”로, 위탁사무명 가호 및 나호는 기업노동과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사무수탁자란 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경북지방사무소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안동지방사무소장”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처리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실과별	위탁 사무명	사무수탁자	근거법령	실과별	위탁 사무명	사무수탁자	근거법령
경제 교통 정책과	2. <u>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나.화물자동차운전자 관리 및 운전 자격확인증 교부 다.사업의 휴,폐지 신고 3. <u>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나.사업의 휴,폐지 신고 4. <u>분쟁조정</u>	(생략)	(생략)	경제 교통 정책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중 소 기 업 진흥과	1. (생략) 가.~바.(생략)	(생략)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업 노동과	1. (현행과 같음) 가.~바.(현행과같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실과별	위탁 사무명	사무수탁자	근거법령	실과별	위탁 사무명	사무수탁자	근거법령
	<u>사.산업단지안의 시설 경비,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예방 에 관한 업무</u> <u>아.기타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필 요한 업무</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사.산업단지안의 시설 의 경비 및 산업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u> <u>아.기타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 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u> <u>자.산업단지 구조고 도화에 관한 업무</u> <u>차.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 력·판로등의 지 원에 관한 업무</u> <u>카.환경친화적 산업 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u>		
<u>실업 대책단</u>	<u>가. (생략)</u> <u>나. (생략)</u>	<u>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경북 지방사무소장</u>	(생략)	<u>기업 노동과</u>	<u>2. (현행과 같음)</u> <u>3. (현행과 같음)</u>	<u>한국산업인력 공단안동지방 사무소장</u>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7.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별표 2]의 6.관광운수관계란중 (7) 및 (8)을 삭제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6. 관광운수관계 (7) ~ (8)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	액	구 분	기준	요액
6. 관광운수관계					6. 관광운수관계		
(1)~(6) 생략					(1)~(6)현행과 같음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7) <삭제>		
	(가) 등록신청	1건	기본 14,000, 대당 2,000		(가)~(아) <삭제>		
	(나) 변경등록신청	〃	기본 5,000, 대당 2,000				
	(다)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신고	〃	3,000				
	(라) 약관신고	〃	2,000				
	(마) 등록사항변경신고	〃	2,000				
	(바) 휴지·폐지신고	〃	1,400				
	(사) 등록증재교부	〃	2,000				
	(아)영업소등록	〃	기본 14,000, 대당 2,000				
(8)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8) <삭제>		
	(가) 등록신청	〃	16,000		(가)~(바) <삭제>		
	(나) 등록사항변경신고	〃	1,400				
	(다)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신고	〃	3,000				
	(라) 약관신고	〃	2,000				
	(마) 휴지·폐지신고	〃	1,400				
	(바) 영업소설치신고	〃	6,000				

경상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7. 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1]의 『명칭 및 위치』란중 “자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은풍초등학교은계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원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선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선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봉곡동 287

[별표2]의 『명칭 및 위치』란중 “구미사곡초등학교”란 다음에 “도봉초등학교”, “진평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도봉초등학교	구미시 봉곡동 산17
진평초등학교	구미시 진평동 70-3

“상산초등학교상주북부분교장”란 다음에 “성동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성동초등학교	상주시 성동동 77

“선주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구미시 선주동 254”를 “구미시 봉곡동 287”로 하며 “구평남부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구미시 구평동 답 455-1”을 “구미시 구평동 474-1”로 한다

[별표3]의 “상모중학교”의 『위치』란중 “구미시 임은동 산28-1”을 “구미시 임은동 463-1”로 하고, “봉곡중학교”의 『위치』란중 “구미시 봉곡동 695”를 “구미시 봉곡동 5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결 산 안 : 2건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003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종 합 심 사 보 고 서

I . 소관부서 : 경상북도지사

II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II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6. 22.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 7. 3

다. 상정일자 : 제19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2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 7. 6 : 상정 · 질의 · 토론 · 의결)

IV .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개요

1. 세입 · 세출 결산현황

가. 총 괄

- 「200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총규모는 3조 8,598억 3천 4백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4조 390억 1천 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5,086억 8천만원이며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5,303억
3천 3백만원임.

이중에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06억 8천 3백만원임.

- －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2,021억 6천 9백만원, 사고이월액 410억 3천
4백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4억 4천 7백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06억 8천 3백만원임.

- 「200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현액은 3조 3,608억 1천 4백만원이나 수납액은
3조 3,449억 5천 5백만원(99%)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조 3,608억 1천 4백만원이나 지출액은
3조 943억 3천 8백만원(92.1%)으로서,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2,506억 1천 7백만원임.

- －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을 보면,
명시이월액 1,944억 9천 3백만원, 사고이월액 396억 7천 3
백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4억 4천 3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0억 8백만원임.

- 「2003년도 공기업 등 5개 특별회계」 총괄결산내역은, 세입예산현액은 4,990억 2천만원이나 수납액은 6,940억 5천 9백만원(139.1%)이고, 세출예산현액 역시 4,990억 2천만원이나, 지출액은 4,143억 4천 1백만원(83.0%)으로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2,797억 1천 8백만원임.

- －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을 보면, 명시이월액 76억 7천 6백만원, 사고이월액 13억 6천 2백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06억 7천 6백만원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예 산 현 액		3,859,834	100%	3,360,814	100%	499,020	100%
세입결산액(A)		4,039,013	104.6	3,344,954	99.5	694,059	139.1
세출결산액(B)		3,508,680	90.9	3,094,338	92.1	414,342	83.0
잉여금(A-B)		530,333	13.7	250,616	7.5	279,717	56.1
	명 시 이 월	202,169	-	194,493	-	7,676	-
	사 고 이 월	41,034	-	39,672	-	1,362	-
	계 속 비 이 월	-	-	-	-	-	-
	보조금사용잔액	6,447	-	6,443	-	4	-
	순세계잉여금	280,683	-	10,008	-	270,675	-

(단위 : 억원)

회 계 명		예 산 현 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 입 (B)	세 출 (C)	세계잉여금 (B-C)	이월액	국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8,598	40,390	35,087	5,303	2,433	64	2,806
일 반 회 계		33,608	33,449	30,943	2,506	2,342	64	100
특 별 회 계		4,990	6,941	4,144	2,797	91	-	2,706
공기업 특별회계	계	2,538	4,477	1,822	2,655	-	-	2,655
	지역개발기금	2,538	4,477	1,822	2,655	-	-	2,655
기 타 특 별 회 계	계	2,452	2,464	2,322	142	91	-	51
	의료급여기금	1,933	1,934	1,932	2	-	-	2
	치수사업	358	368	266	102	64	-	38
	경도대학운영	93	93	75	18	15	-	3
	광역교통시설	68	69	49	20	12	-	8

나. 세입 결산현황

1) 총 괄

- 2003년도 총세입결산액은 4조 390억 1천 3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 3조 8,598억 3천 3백만원보다 1,791억 8천만원이 증가(4.6%)하였음.
- 그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3,449억 5천 5백만원 (99.5%)이고, 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940억 5천 8백만원임.
- 2003년도 미수납액은 570억 9천 6백만원으로서, 77억 2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93억 9천 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C/B
					결 손 처 분	익년도 이 월	
합 계	3,859,833	4,096,109	4,039,013	57,096	7,702	49,394	98.6
일 반 회 계	3,360,813	3,401,236	3,344,955	56,281	7,529	48,752	98.3
특 별 회 계	499,020	694,873	694,058	815	173	642	99.9
공기업특별회계	253,811	447,709	447,709	-	-	-	100
기타특별회계	245,209	247,164	246,349	814	173	642	99.7

※ 예산현액(3,859,833) = 예산액(3,635,010)+전년도이월액(224,823)

2)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3,449억 5천 5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조 3,608억 1천 3백만원보다 158억 5천 8백만원(0.5%)이 감소되었으며,
- 그 내역은 지방세 5,573억 5천 3백만원, 세외수입 3,213억 3천 2백만원, 지방교부세 7,217억 7천 7백만원, 지방양여금 2,591억 8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 1조 4,203억 1천만원, 지방채 650억원임.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562억 8천 1백만원으로 75억 2천 9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87억 5천 2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 손 처 분	익년도 이 월	C/A	C/B
합 계	3,360,813	3,401,236	3,344,955	56,281	7,529	48,752	99.5	98.3
지 방 세	545,000	612,682	557,353	55,329	7,363	47,966	102.3	91
세 외 수 입	316,526	322,284	321,332	952	166	786	101.5	99.7
지방교부세	720,177	721,777	721,777	-	-	-	100	100
지방양여금	265,431	259,183	259,183	-	-	-	97.8	100
보 조 금	1,438,677	1,420,310	1,420,310	-	-	-	98.7	100
지 방 채	75,000	65,000	65,000	-	-	-	86.7	100

※ 예산현액(3,360,813) = 예산액(3,144,000)+전년도이월액(216,813)

3)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940억 5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990억 2천만원보다 1,950억 3천 9백만원(39.1%)이 증가되었음.
- 내역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4,477억 9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933억 8천 1백만원, 치수사업 368억 2천만원, 경도대학운영 93억 2천 3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68억 2천 6백만원임.
-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8억 1천 5백만원으로서, 1억 7천 2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억 4천 2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C/A	C/B
합 계	499,020	694,873	694,059	815	172	642	139	99.9
지역개발기금	253,811	447,709	447,709	-	-	-	176.4	100
의료급여기금	193,313	193,390	193,381	10	-	10	100	100
치 수 사 업	35,796	37,625	36,820	805	172	632	102.9	97.9
경 도 대 학	9,302	9,323	9,323	-	-	-	100.2	100
광역교통시설	6,798	6,826	6,826	-	-	-	100.4	100

※ 예산현액(499,020) = 예산액(491,010) + 전년도이월액(8,010)

다. 세출결산 현황

1) 총 괄

-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출결산액은 3조 5,086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조 8,598억 3천 3백만원 대비 90.9%가 지출 되었음.
- 내역은 일반회계가 3조 943억 3천 8백만원, 특별회계는 4,143억 4천 2백만원이며, 집행잔액 3,511억 5천 2백만원중 다음년도로 2,503억 5천 1백만원을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1,008억 3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잔액)	지출율 (B/A)%
합 계	3,635,010	3,859,834	3,508,680	250,351	100,803	90.9
일반회계	3,144,000	3,360,814	3,094,338	241,313	25,163	92.1
특별회계	491,010	499,020	414,342	9,038	75,640	83.0

2) 일반회계

-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3조 943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3,608억 1천 4백만원 대비 92.1%를 집행하였음.
- 결산액 내역은 일반행정부 4,216억 4천 5백만원, 사회개발비 9,137억 5천 4백만원, 경제개발비 1조 4,889억 5천 2백만원, 민방위비 1,008억 2천 3백만원, 자원및기타경비 1,691억 6천 4백만원임.
- 집행잔액 2,664억 7천 6백만원중 2,413억 1천 3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251억 6천 3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이 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3,144,000	3,360,814	3,094,338	241,313	25,163	92.0	7.2	0.7
일반행정부	410,490	425,151	421,645	2,355	1,151	99.1	0.6	0.3
사회개발비	918,064	936,276	913,754	14,721	7,800	97.6	1.6	0.8
경제개발비	1,519,116	1,716,968	1,488,952	220,477	7,539	86.7	12.8	0.4
민 방 위 비	102,085	105,213	100,823	3,760	630	95.8	3.6	0.6
자원및기타경비	194,243	177,206	169,164	-	8,042	95.5	-	4.5

3) 특별회계

-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990억 2천만원 대비 83.0%인 4,143억 4천 1백만원으로,
- 특별회계의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1,822억 3천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931억 7천 3백만원, 치수사업 266억 4천 3백만원, 경도대학운영 74억 5천 2백만원, 광역교통시설 48억 3천 6백만원임.
- 집행잔액 846억 7천 6백만원중 90억 3천 8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756억 4천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특별회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491,010	499,020	414,342	9,038	75,640	83.0	1.8	15.1
지역개발기금	253,811	253,811	182,237	-	71,574	71.8	-	28.2
의료급여기금운영	193,313	193,313	193,173	-	140	99.9	-	0.1
치 수 사 업	30,293	35,796	26,643	6,316	2,837	74.4	17.6	7.9
경도대학운영	6,795	9,302	7,453	1,550	299	80.1	16.6	3.2
광역교통시설	6,798	6,798	4,836	1,172	790	71.1	17.2	11.6

4)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

- 세출예산 불용액 1,008억 3백만원중 일반회계 251억 6천 3백만원, 특별회계 756억 4천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 계획변경취소 3억 3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9천 2백만원, 예산절감 10억 8천만원, 예산집행잔액 799억 7천 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4억 4천 2백만원, 예비비 95억 1천 4백만원임.

-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유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계	지역 개발	의료 급여	치수 사업	경도 대학	광역 교통 시설
계	100,803	25,163	75,640	71,573	140	2,837	300	790
· 계획변경 취소	303	303	-	-	-	-	-	-
· 집행사유 미발생	492	492	-	-	-	-	-	-
· 예산절감	1,080	904	176	-	-	3	172	1
· 예산집행잔액	79,972	6,820	73,152	71,573	107	1,440	32	-
· 보조금집행잔액	9,442	8,672	770	-	33	737	-	-
· 예 비 비	9,514	7,972	1,542	-	-	657	96	789

라. 예산이용 · 전용 · 이체사용 현황

- 1) 예산이용 · 전용사용 : ‘해당사항 없음’
- 2) 예산이체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마. 예비비 결산현황

-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 250억 8백만원중,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 외 21건에 170억 3천 7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3억 4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8천만원을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1억 1천 4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상세내역은 보조자료 및 ‘200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서’ 참조

바. 채무부담 결산현황

-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국가지원지방도정비사업외 2건에 150억원임.(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제33조 규정)

- 채무부담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채무부담 행 위 액	상환조건	채무부담 행 위 사유	승인일자
합 계		15,000			
	국가지원지방도사업	3,000	2004년 일시상환	도 비 부 담 재 원 부 족	2002.12.16
	지방도 사업	3,315	"	"	2002.12.16
지방도사업(공기관대행)		387	"	"	2002.12.16
	지방양여금사업 (종합건설사업소)	5,671	"	"	2002.12.16
	지방양여금사업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2,627	"	"	2002.12.16

사. 이월비 결산현황

1) 총 괄

-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9건에 2,433억원으로 명시이월 65건 2,022억원, 사고이월 24건 411억원임.
- 이월액 총 89건 2,433억원
 - 일반회계 - 79건 2,342억원
 - 특별회계 - 10건 91억원

2) 일반회계

- 일반회계 다음년도 이월액은 79건 2,342억원으로
 - 명시이월은 태풍 ‘매미’복구비 등 57건 1,945억원이고,
 - 사고이월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 등 22건 397억원임.

- 일반회계 - 79건 2,342억원

구 분	건 수	이월액	내 용
계	79건	2,342억원 (71)	
명시이월	57	1,945 (64)	• 태풍“매미”복구비 856 • 국가지원지방도사업 249 • 지방양여금사업 168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18 • 풍력발전기설치 등 554
사고이월	22	397 (7)	• 국가지원지방도업 141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4 • 지방양여금사업 52 • 수해복구사업 44 • 백안-와촌간도로확포장공사등 86

※ ()는 자금없는 이월액

※ 일반회계 이월사업 조서 : 보조자료 참고

3) 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10건에 91억원으로
-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구 분	건 수	이 월 액	내 용
계	10건	91억원	
명시이월	8건	77억원	•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25 • 경도대학 본관증축 10 • 백안-와촌도로확포장공사등 32 • 기타 10
사고이월	2건	14억원	•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등 14

※ 특별회계 이월사업 조서 : 보조자료 참고

2. 세입세출외 결산현황

가. 기금 결산현황

- 2003년도말 현재 경상북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099억 4천 5백만원보다 454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한 2,553억 9천 2백만원임.

- 적립기금 총괄 -

(단위 : 백만원)

종 류	전년도 (2002)	금년도 (2003)	증 가 액
•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8종	209,945	255,392	45,447

- 적립기금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2002)	금년도(2003)	증 감	비 고
계 : 18종	209,945	255,392	45,447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762	1,883	121	총 무 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386	4,415	29	문화예술산업과
체육진흥기금	12,699	13,363	664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3,292	3,315	23	"
농어촌진흥기금	45,038	62,017	16,979	농 정 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	94,313	115,073	20,760	기업노동과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2,553	3,280	727	"
식품진흥기금	13,928	14,570	642	보건위생과
포플라장학 기금	217	219	2	산 림 과
사회복지기금	5,274	5,686	412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	12,704	14,365	1,661	"
장애인 복지 기금	1,381	1,765	384	"
노인복지 기금	2,465	2,469	4	가정복지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1,519	1,516	△3	농업기술원
여성발전기금	1,618	2,203	585	여성정책과
재해대책기금	5,012	6,710	1,698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784	2,543	759	"
지방채상환기금	0	0	0	예산담당관실

나.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

1) 채 권

- 2002년도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 현재액은 4,603억원으로 금년도에는 1,833억원이 증가한 6,436억원임.

- 회계별 채권의 종류별 현재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2002)	금년도(2003)	증 감	비 고
계	97,961	258,087	160,126	
농어촌주택지원 융자	96,730	95,516	△1,214	
우수농고생지원 융자	200	186	△14	
서울사무소 임차	370	420	50	
전화전용회선 가입예치금	0	46	46	
소방서 관사 임차	392	422	30	
2급 관사임차	70	70	-	
보건환경북부지소 관사임차	50	50	-	
일성콘도미니엄회원권	149	246	97	
투자단장 및 국제교류원숙소임차	0	130	130	
중소기업육성기금	0	121,654	121,654	
농어촌진흥기금	0	29,843	29,843	
식품진흥기금	0	5,525	5,525	
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3,909	3,909	
자활 후견기관 지원사업	0	70	70	

《특별회계》

(단위: 억원)

종 류	전년도(2002)	금년도(2003)	증 감	비 고
지역개발기금	3,623	3,855	232	

2) 채 무

- 2003년도말 현재 경상북도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7,319 억원으로 전년도말 6,347억원보다 972억원이 증가하였음.
- 채무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30억원, 특별회계는 4,889억원이며 채무종류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채무 종류별 현황 -

《일반회계》

(단위: 억원)

종 류	전년도(2002)	금년도(2003)	증 감	비 고
계	2,006	2,430	424	
정부자금 차입	1,030	1,030	0	재정부
지역개발기금 차입	842	1,221	379	도
청사정비기금 차입	34	29	△5	지방재정공제회
채무부담행위	100	150	50	지방도정비사업

《특별회계》

(단위: 억원)

종 류	전년도(2002)	금년도(2003)	증 감	비 고
지역개발기금	4,341	4,889	548	

다. 재산 결산현황

1) 공유재산

-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261억여원으로 전년
도말 현재액 5,085억원보다 176억원이 증가하였음.

- 재산 현황 -

(단위: 억원)

종 류 별	전년도(2002)	금년도(2003)	증 감	비 고
공유재산	5,085	5,261	176	

- 재산 내역 -

(금액단위 : 억원)

종 류 별	전년도(2002)		금년도(2003)		증 감		비고
	면적및수량	가 격	면적및수량	가 격	면적및수량	가 격	
계		5,085		5,261		176	
토 지	170백만 m^2	4,381	171	4,514		133	
건 물	562동	542	619	585	57동	43	
임 목 죽	546천 m^2	95	546	95			
공 작 물		9		9			
선 박	2척	21	2	21			
항 공 기	1대	25	1	25			
유가증권	247,248주	12	247,248	12			

※ 증감내용 : 토지 133억원

수해복구 하천편입(2,178필지)	104억
도로건설 편입부지(253필지)	46억
잡종지(폐척부지) 매각(75필지)	△17억

건물 43억원 「북부청사, 소방청사, 자연환경연수원증축 52억
농기계창고 등 매각 △9억

2) 물 품

- 200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168종에 536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11억원보다 25억여원이 증가하였음.

- 물품 현황 -

(단위: 억원)

종 류 별	전년도(2002)	금년도(2003)	증 감	비 고
물 품	511	536	25	

- 물품 내역 -

(단위: 수량-개/금액 -억원)

구 분	2002 보유		2003 보유		증 감	
	수 량	금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7,489	511	7,531	536	42	25
업무용	5,268	84	5,298	86	30	2
사업용	2,221	427	2,233	450	12	23

※ 증가내역

- 업무용 - 2억원 증가(짚형승용차 2대, 무선장비셀 118대 등)
- 사업용 - 23억원 증가(소방차 13대, 도로보수차 1대 등)

라. 금고결산 현황

1) 일반 및 특별회계

- 2003년도말 경상북도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의 총잔액은 2,458억 6천 1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 165억 4천 5백만원이고, 예치금은 2,293억원 1천 6백만원임.

-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세 출	2004년 이 입	잔 액		
					계	공 예 금	예치금
합 계		3,591,304	3,326,443	19,000	245,861	16,545	229,316
일 반 회 계		3,344,954	3,094,338	19,000	231,616	2,300	229,316
특 별 회 계	계	246,350	232,105		14,245	14,245	
	의료급여기금운영	193,381	193,173		208	208	
	치 수 사 업	36,820	26,643		10,177	10,177	
	경 도 대 학	9,323	7,453		1,870	1,870	
	광역교통시설	6,826	4,836		1,990	1,990	

2) 세입세출외 현금

- 2003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의 잔액은 5억 6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억 8백만원보다 2억 6천 1백만원이 증가 하였음.

- 세입세출외 현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2 0 0 3)			당해연도말 잔 액
		당 기 증 가	당 기 지 출	차감액	
합 계	308	23,801	23,540	261	569
보 증 금	17	60	67	△7	10
보 관 금	264	7,271	7,236	35	299
기 타	27	16,470	16,237	233	260

V.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 내용과 같음.

Ⅵ. 검토의견

1. 총괄부문

가. 결산규모

- 200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조 8,598억 3천 4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조 5,501억 8천 9백만원 대비 3,096억
4천 5백만원(8.7%)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4.6%인 4조 390억 1천
3백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0.9%인 3조 5,086억 8천
만원임.
- 결산잉여금 5,303억 3천 3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 명시이월 2,021억 6천 9백만원, 사고이월 410억 3천
4백만원,
- 보조금 사용잔액 64억 4천 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806억 8천 3백만원임.

나. 재정운용 상황

- 경상북도의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7.2% 증가했고, 세출 결산액은 7.8%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8.9% 및 9.1% 증가에 그쳤음.

이와 같이 나타난 특징을 보면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체수입은 조금씩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립여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 이는 제도적·구조적으로 지방재정수입의 국가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 자립재정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하겠음.
-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과 연계하여, 지방재정 분야도 국세의 지방이양과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나가야 하겠음.

- 일반회계 연도별 재정력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재 정 자 립 도	29.2%	31.8%	25.1%	26.3%
재 정 력 지 수	0.61	0.42	0.39	0.40
투 자 비 비 율	82%	76%	81%	81.9%

- 세입세출 연도별 결산추이 -

(단위: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전년 대비 신장율(%)
세 입 액 (A)	합 계	2,163,877	2,636,265	3,709,992	4,039,013	8.9
	일반회계	1,761,024	2,126,443	3,072,282	3,344,954	8.9
	특별회계	402,853	509,822	637,710	694,059	8.8
	공 기 업	263,375	316,670	412,907	447,709	-
	기 타	139,478	193,152	224,803	246,350	-
세 출 액 (B)	합 계	1,954,290	2,302,355	3,214,927	3,508,679	9.1
	일반회계	1,641,836	1,972,765	2,819,146	3,214,926	14
	특별회계	312,454	329,590	395,781	414,342	4.7
	공 기 업	183,655	148,702	186,456	182,237	-
	기 타	128,799	180,888	209,325	232,105	-
수지(A-B)		209,587 (9.7%)	333,910 (12.7%)	495,065 (13.3%)	530,334 (13.1%)	-

2. 세입부문

□ 세입재원

-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8.9% 증가한 3조 3,449억 5천 4백만원이며, 그중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 4,203억 1천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42.5%를 차지하여 전년(75%)보다 32.5% 크게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8,786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84억 3천 1백만원(14%) 늘었음.
- 지방세는 부과액 6,127억원 대비 9% 줄어든 5,574억원을 징수하고 553억원은 미수납 하였으며, 이중 74억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80억원은 연도이월하였음.
결손처분 내용은 무재산 58억 3천만원, 행방불명 8천 3백만원, 시효완성 6억 5천 4백만원, 소송관련 재산공매시 무배당 2억 2천만원 등 이었음.

□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발생

- 그간 지속적인 징수노력으로 지방세 수납액은 늘고 체납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현재 체납액이 480억여원중 재산이 없거나 행방, 부도·폐업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

- 그러나 채무자 행방불명, 무재산·고질채납자 등에 의한 체납액은 지속적인 재산추적 조사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에 대한 보완, 지방세체납액 목표관리제 운영의 내실화,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 및 시상금 인상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 재정수요의 탄력적인 관리·운영에도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도민의 입장에서 충실한 경영관리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방세 체납액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A)	징 수 액 (B)	미 수 납 액			체납율(%) (C/A)
			계(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0년	373,945	329,670	44,275	5,076	39,199	11.8
2001년	538,661	491,442	47,219	2,987	44,232	8.8
2002년	607,576	555,188	52,378	2,107	50,271	8.6
2003년	612,682	557,352	55,330	7,363	47,967	9.0

- 지방세 미수납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체납처분 절차 진행중	부도·폐업 등 담세력 상실
지 방 세 (일반회계)	47,967(100%)	13,515(28.2%)	34,452(71.8%)

3. 세출부문

□ 세출예산 불용처리

- 결산결과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1,008억 3백만원으로서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취소 3억 3백만원(0.3%), 집행사유 미발생 4억 9천 2백만원(0.5%), 예산절감 10억 8천만원(1.1%), 예산집행잔액이 799억 7천 2백만원(79.3%), 보조금집행잔액 94억 4천 2백만원(9.4%), 예비비 잔액 95억 1천 4백만원(9.4%)임.
- 불용액은 다음년도 예산에 용이하게 쓰여지고,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계획변경·취소 3억원 3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9천 2백만원 등 7억 9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및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와 타당성 등을 세밀히 분석·검토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를 당초에 차단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현 예산제도하에서 예산의 편성·집행·평가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매년 반복되는 점증적인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평가제도의 부재로 책임 행정의 구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물론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사 유 별					
			계 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3,859,834	100,803 (100%)	303 (0.3)	492 (0.5)	1,080 (1.1)	79,972 (79.3)	9,442 (9.4)	9,514(9.4)
일반회계	3,360,814	25,163	303	492	904	6,820	8,672	7,972
특별회계	499,020	75,640	0	0	176	73,152	770	1,542

□ 예산이월의 적정성

- 다음년도 이월액은 89건에 총 2,433억원으로서 명시이월 65건 2,022억원, 사고이월 24건 411억원임.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지만, 예산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 또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 이월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연내 완공 및 사업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적정성을 따져 볼 필요성이 제기됨.

□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회계년도중 재해피해 응급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긴급한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

○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 5천만원
-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농가지원(9건) 148억 8천 3백만원
- 서리·우박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1억 1천 2백만원
- 돼지콜레라 확산방지 및 구제역 차단 6억 3천 7백만원
-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2천만원
- 봉급조정수당 지급 5억 1천 4백만원
- 울진군 제1선거구 도의원 재선거경비 2억 5백만원
- 문경소방서장 장례비 2천 5백만원 등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 이중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03년 11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에 의해 확정되었기 때문임.

-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25,009	17,037	16,342	581	114	
일반회계	25,009	17,037	16,342	581	114	
특별회계	-	-	-	-	-	

※ 참고로 이월사업 조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조서 및 주요 불용액사유 등은 보조자료로 첨부하였음.

VII.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사항없음

VIII. 토론요지 : 특이사항없음

IX. 심사결과 : 원안가결

X. 소수 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없음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

중 합 심 사 보 고 서

I .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감

II .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II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6. 16,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4. 7. 3

다. 상정일자 : 제19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 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 7. 3 : 상정·질의·토론·의결)

IV .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 괄

☐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22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2조 1,212억 6천 2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2조 1,138억 2천 1백만원으로서
 - 의존수입이 전체 88.8%인 1조 8,763억 5천 8백만원
 - 자체수입이 전체 11.2%인 2,374억 6천 3백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은 1조 9,306억 9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 지출되었음.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2,121,262	2,113,821	1,930,693	183,128	○ 순세계잉여금 : 44,566 ○ 이 월 금 : 138,562 · 명시이월 - 75,385 · 사고이월 - 63,177

나. 세 입

□ 예산현액은 2조 1,212억 6천 2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2조 1,140억 3백만원이며, 이중 2조 1,138억 2천 1백만원은 수납(99.9%)되었고, 3천 4백만원은 불납 결손 되었으며, 1억 4천 7백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불납 결손액 3천 4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2천 7백만원
- 잡수입 7백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생의 자·퇴학에 의한 것이며
잡수입은 계약해지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미수납액 1억 4천 7백만원

- 대지료 등 재산수입 6천 3백만원
- 수업료 수입 4백만원
- 기타수입 등 8천만원

채무자 거소 불명 2백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7천 7백만원,
재산 압류 중 3백만원, 기타 6천 6백만원이 미수납 된 것으로
판단됨

- 세입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구분	관 별	예산현액 ①	징결 정액 ②	수 납 액 ③	불납 손 ④	미 수납액 ⑤	수납율 ②/①
	계	2,121,262	2,114,003	2,113,821	34	148	99.9
의 존 수 입	소 계	1,882,004	1,876,358	1,876,358	-	-	100.0
	지 방 교 육 재정 교부금	1,466,591	1,467,096	1,467,096	-	-	100.0
	지 방 교 육 양 여 금	237,232	220,903	220,903	-	-	100.0
	국고지원금	11,253	11,235	11,235	-	-	100.0
	법정전입금	161,685	171,685	171,685	-	-	100.0
	비 법 정 전 입 금	2,660	2,653	2,653	-	-	100.0
	주민(기관등) 부 담 금	1,343	1,546	1,546	-	-	100.0
	기타 지원금	1,240	1,240	1,240	-	-	100.0
자 체 수 입	소 계	239,258	237,645	237,463	34	148	99.2
	재 산 수 입	12,693	11,435	11,371	-	64	99.4
	입 학 금및 수 업 료	32,065	31,404	31,375	25	4	99.9
	사 용 료및 수 수 료	187	192	192	-	-	100.0
	잡 수 입	12,084	12,385	12,296	9	80	99.2
	이 월 금	182,229	182,229	182,229	-	-	100.0

세입결산 내역을 자원별로 보면

의존수입은 1조 8,763억 5천 8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88.7%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4,670억 9천 6백만원
○ 지방교육양여금	2,209억 3백만원
○ 국고지원금	112억 3천 5백만원
○ 법정전입금	1,716억 8천 5백만원
○ 비법정전입금	26억 5천 3백만원
○ 주민부담수입 등	27억 8천 6백만원

자체수입은 2,374억 6천 3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11.3%임

○ 재산수입	113억 7천 1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313억 7천 5백만원
○ 사용료 및 수수료	1억 9천 2백만원
○ 잡수입	122억 9천 6백만원
○ 이월금	1,822억 2천 9백만원

- 세입예산 자원별 내역 -

(단위:백만원)

의존수입					
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주민부담수입등
1,876,358	1,467,096	220,903	11,235	174,338	2,786

(단위:백만원)

자체수입					
소계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237,463	11,371	31,375	192	12,296	182,229

다. 세 출

□ 예산현액은 2조 1,212억 6천 2백만원으로서

예산액 1조 9,689억 8천 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522억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중 1조 9,306억 9천 3백만원은 지출(91%)하였고, 1,385억 6천 2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6.5%)하였으며, 520억 7백만원은 불용(2.5%)처리 하였음

⇒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면

○ 인 건 비	85억 3천 3백만원
○ 물 건 비	54억 6천 8백만원
○ 경 상 이 전	238억 4천 7백만원
○ 자본지출경비	81억 3천 1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60억 2천 8백만원

⇒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	24억 2천 8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261억 1천만원
○ 집 행 잔 액	234억 7천 8백만원임

- 세출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관 별	예산액 ①	예 산 결정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③- ④-⑤	불용 율 ⑥/③
합 계	1,968,982	152,280	2,121,262	1,930,693	138,562	52,007	2.5
유 치 원	13,328	1,465	14,793	13,692	1,053	48	0.3
초등학교	244,886	62,811	307,697	243,955	61,565	2,177	0.7
중 학 교	213,000	34,015	247,015	216,475	29,990	550	0.2
고등학교	324,756	50,727	375,483	324,731	43,210	7,542	2.0
특수학교	17,189	676	17,865	17,729	-	136	0.7
평생교육	10,542	49	10,591	9,529	930	132	1.2
급여관리	979,804	-	979,804	967,148	-	12,656	1.3
복지후생	93,087	-	93,087	74,160	-	18,927	20.3
교육위원회	534	-	534	521	-	13	2.4
교 육 청	24,143	55	24,198	22,791	134	1,273	5.2
지역교육청	16,633	4,795	21,428	19,507	1,630	291	1.3
교육지원기관	9,353	326	9,679	9,146	50	483	4.9
지방채상환	13,051	-	13,051	11,300	-	1,751	13.4
제지출금	9	-	9	9	-	-	0
예 비 비	8,667	△2,639	6,028	-	-	6,028	100

- 불용액 내역 -

(단위:백만원)

성질별	예산액	불용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율
			계 획 변경및 취 소	정원 및 호봉미 달영	예 산 절 감	지 사 급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2,121,262	52,007	2,428	-	-	26,101	23,478	2.5
인 건 비	743,347	8,533	-	-	-	-	8,533	1.1
물 건 비	284,415	5,468	278	-	-	372	4,818	1.9
경상이전	692,367	23,847	287	-	-	19,607	3,953	3.4
자본지출 경비	390,179	8,131	1,863	-	-	94	6,174	2.1
예 비 비 및 기 타	6,037	6,028	-	-	-	6,028	-	99.9
보전지출	4,717	-	-	-	-	-	-	-
내부거래	200	-	-	-	-	-	-	-

라. 예 비 비

○ 당초 예산액 86억 6천 6백만원의 30.4%에 해당하는 26억 3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그 내역은 본청 및 포항 등 18개 교육청의 태풍 피해시설복구비로 26억 3천 6백만원이 지출되었음.

- 예비비 지출현황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사 유
금호공고 담장 복구공사 외 84건	2,638	2,636	2	제14호 태풍(매미) 피해 재해 복구비

마. 예산 전용

당해연도 전용액은 3억원으로서 전임코치 경기력향상 학교회
계전출금을 보상금으로 지출코자 전용한 것임.

- 예산 전용 내역 -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사 업 명	전 용 액		전용일자	비 고
		증	감		
계		300	300		
본청 (평생교육체육과)	전임코치경기력향상 보상금	300		2003.7.5	
본청 (평생교육체육과)	전임코치경기력향상 학교회계전출금		300	"	

바. 계 속 비 : 해당없음

사. 이 월 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2조 1,212억 6천 2백만원 중 1,385억 6천
2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5%임

- 명시이월 99건, 753억 8천 5백만원
- 사고이월 125건, 631억 7천 7백만원

- 이월액 현황 -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이 월 액				비 율 (%)
	계	계 속 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2,121,262	138,562	-	75,385	63,177	6.5

2. 세입세출 외 결산 현황

가. 채권 및 채무의 결산

1) 채 권

- 전년도말 채권액 779억 8천 7백만원보다 52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된 832억 4백만원으로서
- 전교조경북지부사무실 전세권 1천만원과 국고 대여장학금 52억 1천 2백만원, 잡수입 1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 재산임대료 1백만원, 수업료 5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채권 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연도중 증감액		당 해 연 도 말	증 · 감
		증	감		
계	77,987	14,014	8,797	83,204	5,217
원어민영어교사 주택 전세권	81	-	-	81	0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실 전세권	70	80	70	80	10
국고대여장학금	77,683	13,865	8,653	82,895	5,212
재산 임대료	143	64	65	142	△1
수 업 료	10	4	9	5	△5
잡 수 입	-	1	-	1	1

2) 채 무

전년도말 채무액 1,625억 4천 6백만원보다 47억 1천 7백만원이 감소된 1,578억 2천 9백만원으로서 차입금 내역은

- 교원명예퇴직수당 ('99~2000) 1,134억 5백만원
- 학교시설비 (2000) 122억 7천 4백만원
- 소규모학교통폐합지원비 (2000) 321억 5천만원임.

- 채무 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 년 도 해 말	기한도래 미 지 급 자	비 고
		계	채 무 발생액	상환· 소멸액			
차입금	162,546	△4,717	-	△4,717	157,829	-	명퇴재원 금 및 이자상환 ('99)

나. 재 산

1) 공유 재산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1,646억원이 증가된 2조 8,523억 6천 4백만원임.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1,673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된 2조 7,980억 2천 8백만원이며
- 잡종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27억 2천 2백만원이 감소된 543억 3천 6백만원임.

- 공유재산 현황 -

(단위: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계	2,687,764	164,600	202,625	38,025	2,852,364
행정재산	2,630,706	167,322	195,076	27,754	2,798,028
잡종재산	57,058	△2,722	7,549	10,271	54,336

2) 물 품

- 물품은 전년도말 보다 227억 3천 9백만원이 증가된 1,677억 9천 1백만원으로서 전기·기계 등 10종, 6,731점 구입에 따른 물품 현재액임.

- 물 품 현 황 -

(단위:수량/점, 백만원)

품 종 별	전 년 도 말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 해 연 도	
	현 재 액		증		감		현 재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기기계 등 10 종	28,705	145,052	6,731	31,563	1,261	8,824	34,175	167,791

V.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 내용과 같음.

VI. 검토의견

1. 총괄 부문

□ 200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22억 8천만원을 포함한 2조 1,212억 6천 2백만원으로

세입결산은 2조 1,140억 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1,138억 2천 1백만원을 수납(99.9%)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억 8천 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91%인 1조 9,306억 9천 3백만원임

- 따라서 세입 및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831억 2천 8백만원으로 이월금 1,385억 6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45억 6천 6백만원임

2. 세입 부문

□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88.7%,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재산 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11.3%임

- 자체수입중 이월금은 사실상 2002년도에 국비로 지원된 예산이 2003년도로 이월된(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것으로서 순수한 자체수입은 3%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임을 감안할 때
- 이월금 1,385억 6천 2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445억 6천 6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년도별 세입추이 -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별	합 계	의 존 수 입		자 체 수 입	
			%		%
2001	1,782,704	1,586,098	89.0	196,606	11.0
2002	1,931,516	1,658,664	85.8	273,512	14.2
2003	2,121,262	1,882,004	88.7	239,258	11.3

- 또한, 매년 반복되는 불납 결손이나 미 수납액 등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발생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별	불 납 결 손 액					미 수 납 액				
	계	무재산	거 소 불 명	시 호 완 성	기 타	계	거 소 불 명	재 력 부족	재 산 류 중	기 타
2001	59	7	2	1	49	115	7	39	7	62
2002	49	4	2	3	40	153	3	78	17	55
2003	34	-	-	1	33	147	1	77	3	66

3. 세출부문

□ 먼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2조 1,212억 6천 2백만원의 91%를 지출하였고
미지출액은 1,905억 6천 9백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 1,385억
6천 2백만원(이월율 6.5%), 불용액 520억 7백만원임(불용율 2.5%)

□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 2004년도 이월액은 1,385억 6천 2백만으로(예산현액의 6.5%)

- 명시이월 : 99건 753억 8천 5백만원(3.5%)
- 사고이월 : 125건 631억 7천 7백만원(3.0%)임

○ 이월액은 주로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는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하여 세출예산 이월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당해연도 교육수혜자에게 잠재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은 단위사업의 성격,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월비 발생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별	1,782,704	이 월 비			이월율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01	1,782,704	135,974	71,058	64,916	7.6
2002	1,931,516	152,280	47,398	104,882	7.9
2003	2,121,262	138,562	75,385	63,177	6.5

□ 불용액에 대하여

-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520억 7백만원으로서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24억 2천 8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61억 1백만원, 집행잔액 234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327억 2천 8백만원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음
- 특히, 급여·복지 예산중 인건비는 교육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예측으로 소요액 추계에 정확을 기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으로써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예산은 추진 상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타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사업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 불용액 발생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불 용 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율 (%)
			계획변경 및 취 소	정원 및 호봉미달 운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행잔액	
2001	1,782,703	63,961	17,593	15	2,268	23,000	21,085	3.6
2002	1,931,516	32,728	2,844	2	927	13,630	15,324	1.7
2003	2,121,262	52,007	2,428	-	-	26,101	23,478	2.5

VII.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IX. 심사결과 : 원안가결

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 동 의 안 : 1건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일자 : 2004. 7.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의 번	안 호
--------	--------

1. 제 안 사 유

- 경상북도 북부청사의 신축 이전으로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된 구 청사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안동시에 위임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현재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마땅히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시설물의 노후와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 구 산림환경연구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안동시학습관으로 활용코자 매수요구가 있으므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매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와 구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매각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2.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3. 매각재산 현황

○ 재산의 매각

- 토지 13필 : $9,871m^2$ (2,985.9평정도)
- 건물 14동 : $2,552.8m^2$ (772.22평정도)

4. 재산의 처분 내용

구분	건 명	면 적 (m^2)	추 정 액 (천 원)	용 도 및 필 요 성
처 분	舊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	토지 3 필 $2,048m^2$ 건 물 3 동 $836m^2$	368,893	○ 위치 : 안동시 수상동 230-13 ○ 규모 : 철근콘크리트 2층 ○ 필요성 및 효과 · 경상북도 북부청사의 신축으로 청사의 기능상실과 건물의 노후로 청소년 비행장소로 악용될 우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안동시 학습관으로 활용코자 매수요구
	舊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토지 9필 $6,358m^2$ 건물 7동 $1,337.7m^2$	413,648	○ 위치 :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829 ○ 규모 : 철근콘크리트 2층 ○ 필요성 및 효과 · 경상북도 북부청사로 이전된 후 청사기능상실과 건물노후화로 청소년비행장소로 악용우려 · 안동영덕간국도4차선확 · 포장 공사도로 부지일부 편입
	舊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토지 1필 $1,465m^2$ 건물 4동 $379.1m^2$	154,117	○ 위치 : 안동시 용상동 458 ○ 규모 : 슬라브 단층 ○ 필요성 및 효과 · 경상북도 북부청사로 이전된 후 청사기능상실과 건물노후화로 청소년비행장소로 악용우려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m^2 , 천원)

[illegible]

2004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 지방재정법에 의거 2004년도 도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賣却財産

○ 구 산림환경연구소북부지소

- 위 치 : 안동시 수상동 230-13
- 규 모
 - 토 지 : 3필 2,048 m^2
 - 건 물 : 3동 836 m^2
- 필요성 및 효과
 - 경상북도 북부청사의 신축으로 청사기능의 상실과 건물의 노후로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높으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안동시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매수의사 있음

○ 구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위 치 :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829
- 규 모
 - 토 지 : 9필 6,358 m^2
 - 건 물 : 7동 1,337.7 m^2
- 필요성 및 효과
 - 경상북도 북부청사로 이전된 후 청사기능상실과 건설노후로 청소년비행장소로 악용가능
 - 안동영덕간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로 부지일부편입(9필7,326 m^2)

○ 구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

• 위 치 : 안동시 용상동 458

• 규 모

- 토 지 : 1필 1,465 m^2

- 건 물 : 4동 379.1 m^2

• 필요성 및 효과

- 경상북도 북부청사로 이전된 후 청사기능상실과 건설노후로
청소년비행장소로 악용가능

□ 건 의 안 : 1건

- 소형항공기이용한지역항공노선화망구축에관한건의안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노선화망구축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04년 6월 일

발 의 자 : 김석호 의원외 50인

1. 제안이유

-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라 경북의 교통정책은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있으며 지역의 경제산업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 노선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 노선화망 구축은 경북지역의 관광 및 산업성장의 중요한 SOC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침체된 지방공항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에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경상북도는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 노선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와 도내 희망자본 및 국내외의 유력한 민간자본을 확보하여 새로운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경상북도는 경부고속철도의 정차역과 경상북도의 주요지역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추가적인 소형공항을 건설하여야 할 것임.
- 경상북도는 인천공항과의 적절한 연계방법을 모색하여 외국바이어 등의 지역산업 및 관광지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중앙정부는 국비의 지원이 대폭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건의내용: 별 첨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노선화망구축에 관한건의안

지난 1990년대 이후 자가용 승용차와 화물수송 등을 위한 물류 이동량의 폭발적 증가는 곧 우리나라의 교통망에 지체 및 정체현상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는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민간기업의 입지조건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대기업을 비롯 중소기업의 지역 내 유치에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경북은 우리나라 그 어느 지역보다 수려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관광지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낙후되어 있어 관광및레저산업이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속철도의 개통은 전국이 만나질 생활권으로 묶이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에 경북의 교통정책도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더욱이 2010년경 경북지역에는 김천·구미역사와 경주역사가 완공될 예정에 있으므로 이들 역사들은 대구광역시내의 고속철도 동대구역사와 더불어 경북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요충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기존의 경부선 철도로 운행되는 열차가 크게 줄고, 정차지 증설로 운행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길어지자 고속철이 정차하지 않는 구미시 등의 중소도시 주민들은 되레 '저속철 시대'를 맞고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시기는 기존의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망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어지는 동시에 최적의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대체교통망 개발의 한 방법으로서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 노선화망을 구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 노선화망 구축은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교통접근성이 낙후된 경북북부권과 동해안 지역의 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교통을 분산시켜 지역 경제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형항공기 노선화망 구축은 경북지역의 관광 및 산업성장의 중요한 SOC로 작용하여 지역 전체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소형항공기 노선화망 구축은 또한 경북지역 내의 침체된 공항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경부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동대구역사를 중심으로 경북북부권의 예천공항, 동해안권의 울진공항, 그리고 동남권의 포항공항을 연결하여 경제 및 관광레저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가 김천·구미역사, 경주역사에 정차하게 되는 2010년경을 대비, 소규모의 소형항공기 전용 공항을 교통요충지에 추가적으로 건설할 경우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한 지역발전은 시너지효과를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형항공 노선화망 구축은 많은 재정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북의 넓은 지역을 명실상부하게 만나질 생활권에 들

도록 함으로써 경제 및 관광레저산업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최대의 관문인 인천공항과의 교통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소형항공기노선화망 구축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니 관계당국의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지역항공사는 초기 200-300억 정도의 자본금으로 소형항공기 5대 정도의 규모로 출범하여 점차적으로 항공기 대수 및 노선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경상북도는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 노선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항공전문가, 전공교수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형항공기의 노선화에 필요한 각종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내의 외국기업 경영실태파악과 함께 전문 경영컨설팅사의 분석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사업의 성패가 지역민들의 관심과 협조 및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도민의 확실한 의지와 자신감을 고취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상북도는 기존의 대형 항공사가 아니라 경상북도와 도내 희망 자본 및 국내외의 유력한 민간자본을 확보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진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상북도는 경부고속철도의 정차역과 경상북도의 주요지역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도내공항인 포항, 예천, 울진과 함께

지역적인 분포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소형공항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공항은 도심내의 임야(해발4~500M)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도시내 소음등을 해소토록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교통접근성을 극대화 한다.

넷째, 경상북도는 경북지역에서의 지역항공노선화를 조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그와 연계하여 항공, 육상교통 등의 체계적인 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인천공항, 제주공항, 서울 등과 같은 타 거점공항들과의 적절한 연계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바이어 등의 지역산업 및 관광지와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앙정부는 광역시단위에서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 등을 건설할 경우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어진 대체교통수단을 추진할 경우 국비의 지원이 대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북지역의 교통접근성을 높혀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견인하고 낙후지역에 새로운 관광레저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하여 우리지역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6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원 일 동

□ 기 타 안 : 2건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철회의건
-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철회안

의안 번호	
----------	--

요구년월일 : 2004. 7.

요 구 자 : 김정기 의원 외 32인

요 구 서 명 : 별첨

☐ 요구이유 및 주요골자

2003년 12월 17일 김정기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발의안을 별지와 같은 이유로 철회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발의안철회안 붙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철회안

2003년 12월 17일 김정기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 유

2003년 12월 17일 김정기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발의안"은 2004년 5월 27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정기 의원의 도정질문시 "300만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재단법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하여 경상북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 줄 것"을 질문하자 집행부측 답변에서 "전문가와 재협의 등을 통해서 도비 출연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를 받아서 도민을 위한 의회활동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본 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앞으로 정기감사 등을 통하여 도의회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감사하여 문제점을 시정조치 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발의된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철회하려는 것임.

※ 붙임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

상임위원회 선임현황

구 분	의 원 명	비 고
의장단	의장: 李哲雨(淸道), 부의장: 孫奎三(浦項), 李廷白(尙州)	
의회운영(13) 위원장: 安順德 간 사: 朴升鶴	金柄軫(聞慶) 金成河(慶山) 金淳見(浦項) 朴升鶴(靑松) 安順德(義城) 李鎬根(英陽) 張美香(尙州) 蔣 煜(軍威) 鄭武雄(鬱陵) 鄭尙鎭(醴泉) 韓惠蓮(比例) 黃福姬(比例) 黃相祚(慶山)	
기획(9) 위원장: 李源萬 간 사: 金柄軫	權璟浩(英陽) 權鍾淵(安東) 金柄軫(聞慶) 梁在璟(淸道) 李源萬(浦項) 張瓚植(榮州) 張河淑(比例) 鄭武雄(鬱陵) 崔永郁(盈德)	
행정사회(9) 위원장: 羅鍾澤 간 사: 黃相祚	金碩鎬(龜尾) 羅鍾澤(高靈) 朴璟東(鬱陵) 方大善(星州) 孫慶贊(盈德) 李相千(浦項) 張大鎭(安東) 黃福姬(比例) 黃相祚(慶山)	
교육환경(10) 위원장: 鄭補鎬 간 사: 金成河	權竣澤(漆谷) 金善鍾(安東) 金成河(慶山) 金淳見(浦項) 金應奎(金泉) 金俊鎬(永川) 朴鍾郁(靑松) 李 達(慶州) 張美香(尙州) 鄭補鎬(龜尾)	
농수산(10) 위원장: 李容錫 간 사: 鄭尙鎭	姜榮西(奉化) 金周淵(漆谷) 朴升鶴(靑松) 方有鳳(蔚珍) 孫奎三(浦項) 孫萬德(軍威) 申永鎬(義城) 李相孝(慶州) 李容錫(龜尾) 鄭尙鎭(醴泉)	
산업관광(9) 위원장: 蔡熙永 간 사: 韓惠蓮	金正基(金泉) 金熙文(奉化) 朴斗弼(比例) 禹成浩(榮州) 李廷白(尙州) 任元植(蔚珍) 蔡熙永(聞慶) 崔圓炳(慶州) 韓惠蓮(比例)	
건설소방(9) 위원장: 朴榮化 간 사: 蔣 煜	金基大(星州) 金靖子(比例) 朴榮化(高靈) 安順德(義城) 尹敬熙(比例) 李鍾七(永川) 李鉉濬(醴泉) 李鎬根(英陽) 蔣 煜(軍威)	

의정활동보고서(제190회 정례회)

2004. 7 인쇄 / 2004.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